

#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학생용)

## 동의(consent)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 1 강의실에서의 유의사항

- (1) 의상, 외모나 몸에 관한 성적(性的)인 비유를 하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뭐 남자친구 만나?”, “오늘 귀고리 정말 근사한데 아주 sexy해 보여.”, “오늘 10점 만점에 8점”, “다이어트 좀 해야겠네.” 등
- (2)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얼굴·팔·손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볼 꼬집기, 머리 쓰다듬기, 허벅지나 팔뚝 만지기 등

### 2 단체 모임에서의 유의사항

- (1)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도록 자신의 우월한 지위(나이, 학번)를 이용하여 성적(性的)인 농담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계속 지켜봤는데 네가 참 좋아진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등  
예) 원하지 않은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2)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오라고 해도 가기 싫으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 (3)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합니다.  
예)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이다.” 등
- (4)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술 게임을 삼가야 합니다.  
예) 러브샷, 게이샷, 레즈샷, 산너머 산, nice body, 세 글자 등
- (5) 신체 접촉이 요구되는 게임을 지양합니다.  
예) 안아서 풍선 터뜨리기, 신문지 위에 올라가기, 입으로 휴지 나르기.
- (6) 음담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너는 내 스타일이다.” 등
- (7) 뒤풀이에서 두 사람만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바람 좀 쐬고 오는 것, 술을 더 가지러 가는 것,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것 등
- (8)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9) 술에 취해 있는 학우가 있다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여자 학우와 남자 학우를 같이 묶어주지 않아야 함.
  - 택시를 태워 보낼 경우 택시번호를 메모해 둬.

### 3 사이버상에서의 유의사항

- (1) 개인톡이나 단톡방에서 성적(性的)이거나 타인을 비하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특히 단톡방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불쾌해 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농담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 (2)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거나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는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현재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운받아 다시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일 때에는 형법의 협박죄가 해당합니다.
  -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진을 찍거나 공개하면 안 됨.
  -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든 타인의 사진, 타인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본인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등
  - 일상 사진이지만 그 후에 음담패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 4 사건 발생 시 유의사항

- (1)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유없이 그랬잖어? 꽃뱀이네”, “그러게 누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래” 등의 표현 및 피해 사실을 필요이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를 지양합니다.
- (2)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 “왜 이렇게 예민해”, “피해자면 당연히 슬프고 무기력해야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당연히 거부했어야지”
- (3) 가해행위자의 주변인들이 적당히 화해하라고 종용하거나 가해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피해사실을 공론화 하는 것을 공동체에 폐를 끼친 행동이라 규정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종용하는 행위, 피해 내용을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의 해결의지를 위축시키려는 행위 (예, 신고해 봤자 너만 손해야!)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학내 인권센터(양성평등상담실)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 후 후속 조치(2차 피해방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